

가상광고, 콘텐츠와 조화 이뤄야 효과 기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9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광고의 허용 범위와 시간 확대 등 세부기준을 담은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의결,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가상광고의 종류는 소품형, 자막형, 동영상형 가상광고와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됐다. 애초 행정예고안에 포함됐던 음향사용 가상광고는 시청권 침해 및 방송법상 가상광고의 정의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허용하지 않았다. 오락, 스포츠 보도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보호를 위해 방송 진행 중 동영상형 가상광고를 제한했다.

가상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는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가상광고와 간접광

고가 동시에 노출될 경우, 두 광고 크기의 합이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운동경기나 관련 행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가상광고가 선수나 심판, 선수·심판의 장비 일부를 가려서는 안 되지만, 선수나 심판이 갑자기 이동해 이미 노출된 가상광고에 의해 가려지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사 전산시스템 개발 및 안정화, 방송프로그램 및 광고 편성의 전면적인 개편, 시행령 개정 전에 판매된 광고 물량 등을 고려해 10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에 녹아들 때 효과 기대할 수 있어

지난 8월 26일 방통위는 이번 고시 제정안의 의견 수렴

〈표〉 방송법 시행령 개정전후 비교표

구분	현행	개정
가상 광고	★ 운동경기 중계에만 허용 ★ 지상파, 유료방송 허용시간 동일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 허용장르 확대 운동경기 중계 → 운동경기 중계, 오락, 스포츠 분야의 보도 ※ 입법예고안에서 '교양' 제외 ★ 허용시간 확대(유료방송 등) 프로그램시간의 5/100 → 7/100 ★ 시청권 보호 의무 규정
간접 광고	★ 지상파, 유료방송 허용시간 동일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5/100)	★ 허용시간 확대(유료방송 등) - 프로그램시간의 5/100 → 7/100 ★ 시청권 보호 의무 규정
협찬 고지	★ 금지 -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일부 제공하는 자의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도 협찬고지 불허 ★ 종류 제한 - 공공기관/공익법인의 방송광고 금지품목에 대한 공익성 캠페인 협찬만 허용	★ 금지 완화 - 방송광고 금지품목을 일부 제공하는 자에게도 방송광고가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상품명 또는 품목명의 협찬고지 허용 ★ 종류 확대 - 공익성 캠페인 협찬, 공익 행사 협찬 허용

을 위해 시민단체, 방송사업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여성민우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시청권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SBS, 종편 등 방송사업자는 방송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진정한 시청자 복지를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디어크리에이트 관계자는 “가상광고는 중간광고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일반광고 대비 높은 시청률을 기대할 수 있다”며 “9월 21일부터 판매, 적용되는 가상광고는 콘텐츠에 따라 유형별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하며, 특정 프로그램에 가상광고를 독점 집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기업 광고팀장은 “가상, 간접광고나 협찬 등은 프로그램에 녹아들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프로그램에 노골적인 협찬 고지나 광고 노출은 오히려 시청자의 반감을 살 가능성도 있으니 브랜드의 성격과 프로그램의 성격이 맞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여러 세부사항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락 분야 등으로 가상광고를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가상광고 제작을 촉진하여 창의적인 방송광고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K A A**